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합계 | 443,691,579 | 13,310,747 |
| 일반회계 | | 441,576,128 | 13,247,284 |
| 특별회계 | | 2,115,451 | 63,464 |
| | 기타특별회계 | 2,115,451 | 63,464 |
| | 지하수특별회계 | 349,630 | 10,489 |
| |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| 1,344,101 | 40,323 |
| | 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 | 120,279 | 3,608 |
| |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 | 301,441 | 9,043 |

- 제 2조 세입.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.세출예산"과 같다.
- 제 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663,578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있다. 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